

○專門委員 張奉萬 油印物 서울特別市水道施設의原因者및損壞者負擔金徵收條例案 檢討報告書 油印物을 參考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와 2페이지는 次長님께서 자세하게 說明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 條例에서 중요한 것이 과연 이 條例가 필요하나, 다음에는 關係法令이 무엇이나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인물 2페이지에 關係法令을 水道法 第53條, 3페이지에 水道法 第54條 그리고 行政訴訟法 第18條, 第20條, 地方稅法 第58條 그리고 行政審判法 第18條, 그리고 7페이지의 裁決의方式에 관한 第35條 이와 같은 關係法規事項을 10페이지까지 報告 올렸습니다. 內容은 유인물을 參照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檢討意見입니다. 서울特別市 上水道事業本部長님께서 提案說明에서 損壞者의負擔金 徵收 實態를 報告했고, 또 條例案의 主要骨子を 말씀드렸으며, 負擔金의 범위와 12페이지 중간에 있는 損壞者 水道管理外者의 義務事項 그리고 水道管理者의 義務 그리고 13페이지 記錄된 內容事項을 자세히 說明을 했습니다.

그런데 本人이 檢討報告 할 적에는 14페이지에 첫째, 施設保護 主體의 未設定 事項이 있었고, 용어해설에 있어서 그 內容에 第2條第1項 그리고 第2條第3項 그리고 負擔金 算定基準의 적용 범위 그리고 油印物 15페이지에 申告義務者 管理責任 主體의 未設定 그리고 異議申請 方法의 未制定 그리고 施行日字, 條例에서 施行日字는 94年 1月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審査日은 2月 18日이기 때문에 이 部分에 관해서는 修正을 해야 되겠다, 이런 意見を 委員님께 報告합니다.

그리고 16페이지, 17페이지, 18페이지, 19페이지 거기에는 條項別 檢討意見과 修正을 요하는 事項에 관한 필요성을 報告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檢討報告를 마치겠습니다.

.....
(參照)
5. 검토의견

서울특별시 상수도본부장은 제안설명에서

□ 먼저 손괴자부담금의 징수실태를 말씀드리면

- 도시가스, 체신 등 지하시설 확충과 지하철 및 각종 공사시 손괴로 인하여
- '92년 1,483건 489,918천원을 징수하였고, '93년 1,982건 771,832천원을 징수로 점차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 본 조례제안의 주요골자는

-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 범위와 산정기준을 정하였으며
- 수도관리자와 손괴자 등 수도관리 이외의 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과
- 수도시설 손괴에 따른 타시설 및 재산상 피해에 관한 복구와 배상한계와
- 수도시설에 인접한 타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 부담금의 범위는

- 수도시설의 원상복구비와
- 수도시설의 손괴로 인한 누수량이나 원상복구를 위하여 퇴수하는 관내부의 수돗물과 단수지역에 공급하기 위하여 급수차에 적재한 수돗물에 대한 요금과
- 급수차의 사용경비
- 도로복구비 및 도로급수방지 비용
- 원상 복구작업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의 경비와
- 단수지역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등으로 정하였습니다.

□ 손괴자등 수도관리외자의 의무에 대하여는

- 손괴시 시장에게 반드시 신고토록 하여 수도관리자가 원상복구토록 하였으며
- 수도시설이외의 공사를 하는 자가 직접 손괴를 하지는 않았으나 누수등 수도시설의 손괴를 확인시에도 이를 신고토록 의무화하였습니다.

□ 수도관리자의 의무에 대하여는

- 수도시설의 손괴 발생사실을 알았을 경우에 즉시 현장출동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과 아울러

<p>○ 증거확보등 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전조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p> <p>□ 수도시설의 손괴에 따른 타시설물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p> <p>○ 이에 대한 원상복구 또는 피해보상은 손괴자가 부담토록 하였습니다.</p> <p>○ 다만, 급수공급을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영업손실과 수도물을 공급받지 못하여 발생한 수도사용자에 대한 피해손상은 일반적 수도시설관리와의 형평을 고려 피해보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p> <p>□ 수도시설에 인접한 타시설물의 설치한계에 대하여는</p> <p>○ 수도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는 타시설물을 수도시설과 인접하여 설치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p> <p>○ 이를 위반하여 타시설물을 설치하였을 경우 수도관리자는 이를 이설 요구하거나 강제로 철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p> <p>위와 같이 서울특별시수도시설의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안 제안설명을 하였으나, 본 위원은 다음 사항을 검토보고하여 수정안으로 대한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보고합니다.</p> <p>가. 시설보호 주체의 미설정</p> <p>조례안 제1조에서는 목적에 사업보호와 시설파괴손괴에 대한 보호주체사실을 설정하지 않고 막연히 위임근거법규만 나열하고 있음.</p> <p>예 :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을 파괴 또는 손괴한 사실에 대하여 등 시설보호 내용 누락되었음.</p> <p>나. 용어해설의 내용 불충분</p> <p>(1) 제2조제1항</p> <p>원인자부담금 용어 설명에서 원인자부담금이란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시설의 개조 및 이설 등으로 인한 라고 규정하여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에 대한 법리 해석의 기준이 결여되어 있음</p>	<p>(2) 제2조제3항에서</p> <p>원상복구비 설명에 있어 시설물원상복구 비용 내용설명이 부족함.</p> <p>예 : 시설물의 원상복구공사의 소요되는 비용</p> <p>다. 부담금 산정기준 적용의 범위와 예외성 명시가 부족함.</p> <p>예 : 제4조제1항 : 적용기준 제4조제2항 :</p> <p>라. 신고의무자 관리책임주체 미설정</p> <p>예 : 제5조-시장이 누구인지 정확한 명칭이 명시되어야 하나 제시되지 아니하였음.</p> <p>마. 이의신청방법의 미제정</p> <p>제12조제1항에 있어 이의신청방법이 누락되어 있음.</p> <p>바. 시행일자의 수정이 필요함</p> <p>예 : 부칙에서 이 조례는 1994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p> <p>이유 : 조례심의기일은 1994.2.18 (檢討報告書 一部內容 收錄 省略)</p> <p>.....</p> <p>○委員長 崔鍾根 이상 提案說明과 檢討報告를 잘 들었습니다.</p> <p>그러면 서울特別市水道施設의原因者및損壞者負擔金徵收條例案에 대한 委員님들의 質疑에 대하여 上水道事業本部長의 答辯을 듣도록 하겠습니다.</p> <p>質疑하실 委員님께서서는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p> <p>金炯奎委員님 먼저.</p> <p>○金炯奎委員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p> <p>우선 題目부터 서울特別市水道施設의原因者및損壞者負擔金 그렸는데 水道施設損壞原因者및損壞者負擔金徵收條例 그렇게 하는 것이 좀 낯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고요.</p> <p>두번째로는 물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第2條 用語의 定義에서 다소 表現이 되어 있습니다만 條例上으로 보자면 水道施設의 損壞의 原因行爲가 과연 무엇이냐, 損壞의 形態가 무엇이냐, 이런 問題는 條例案에</p>
---	--